

# 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 사업 공모 FAQ

2024. 9. 12.(목)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서울에 집중된 공연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연시장 75.1% 서울 집중), 지역에서 순수예술의 다양한 장르를 향유할 수 있도록 「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 FAQ로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FAQ를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I. 공통사항

### Q1. 공모 유형①(사전매칭 방식)과 유형②(사후매칭 방식)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유형①> 사전매칭	<유형②> 사후매칭		
방식	공연장·단체가 사전에 온오프라인 B2B마켓(서울아트마켓 등)을 활용하여 <u>자율적으로 매칭</u> 한 경우 사업비 일부 지원	공연단체 대상 작품 공모·선정하고, 공연장 매칭 <u>수요조사</u> 를 통해 단체·공연장 매칭 성공한 경우 사업비 일부 지원		
심사절차	· (공연장 공모) 서류심사로 작품의 예술성, 예산 검토하여 선정	· (공연단체 공모) 서류심사로 작품의 예술성, 예산 검토하여 선정 · (공연장 공모) 선정된 작품 중 수요조사하여 최종 선정		
교부대상	서울 외 지역 소재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공연단체는 용역계약자로서 참여 가능)			
규모	· 약 190억원 (공연장·공연단체당 총 10건, 총 10억원까지 지원)	· 약 50억원 (공연장·공연단체당 총 5건, 총 5억원까지 지원)		
* 공모 유형별 지원 결정액에 따라 지원 규모 변동 가능				
일정	'24.9월	'24.10월	'24.11월	'24.12월
	<b>&lt;유형1 : 사전매칭&gt;</b>			
	(9~10월) 공연장-단체 자율 매칭	(10.7.~10.21.) 공모서류 접수	(11월 초) 결과 발표	<b>&lt;유형2 : 사후매칭&gt;</b>
			(11.11.~12.6.) 공연단체 공모 서류 접수·선정	(12.9.~12월 말) 공연장 수요조사 및 결과 발표

### Q2. 유형①, 유형② 간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단, 먼저 진행되는 <유형① 사전매칭 방식 공모>을 통해 총 10건 또는 총 10억 원 이상의 공연이 결정된 공연단체 및 공연장의 경우, 유형② 지원이 불가합니다.

**Q3. 왜 서울지역 공연장은 사업 참여가 제한되나요?**

→ 본 공모사업은 서울에 집중된 공연시장(75.1%, 2023 공연예술조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Q4. 왜 뮤지컬 장르만 공연장의 자부담이 30%인가요?**

→ 2024년 공연유통 공모사업 결과, 뮤지컬 장르에 대한 지역 공연장의 높은 수요로 말미암아 전체 예산의 약 25.2%가 뮤지컬 장르에 지원되었습니다. 지역에서도 다양한 순수 예술장르를 다채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자부담을 차등 책정하였습니다.

**Q5. 왜 발표심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진행되나요?**

→ 본 공모사업은 이미 창작되어 1회 이상 상연한 작품을 대상으로 지역 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발표심사가 없는 대신, 공연영상 제출을 의무화하여 공연장·공연단체의 행정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Q6. 지역 소재 공공 공연장 또는 지자체 문화재단에서 자체 제작한 공연(작품)으로도 지원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사업은 민간 공연단체에서 제작한 공연(작품)을 유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문예회관 자체제작 공연(지역 소재 공공 공연장 또는 문화재단이 단독으로 공연권을 소유하는 공연작품)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7. 지역문화재단이 대관하여 운영하는 공연장으로도 지원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전국 문화시설 총람(최신 기준)에 등재된 문예회관이거나, 지자체 설립 또는 공기업(공단, 공사 등)에 의한 설립 및 위수탁 운영 중인 공공 공연장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 공연장 제외)

**Q8. 공모 신청 시 공연장이 'e나라도움 비예치형'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의 8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 17조 3항에 따라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금을 예탁기관에 예탁하는 사업의 경우 예치형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에는 비예치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9. 접수기간이 약 2주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 2항에 의거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 하였습니다. **접수기간은 2주 정도이지만, 공고기간은 1달 이상**이오니, 충분한 준비를 거쳐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0. 사업비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보조금 교부대상은 공연장**이며, 사업비 집행·정산의 의무가 있습니다.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집행 및 증빙 등록 필수입니다.  
→ 공연단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연장과의 용역계약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지만, 공모신청시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11. 자부담 책정이 필수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공연장은 필수로 자부담을 책정해야 하며, 공연단체는 자부담 의무가 없습니다.  
※장르별 공연장 자부담 비율 상이(뮤지컬 30%, 나머지 장르 10%)

**Q12. 유료 공연이 필수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티켓은 장당 최소 정가 10,000원 이상 책정하되, 온라인 티켓에매발권 필수입니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서 '25년 티켓판매수·판매액을 공개합니다. 무료 초청의 경우, 공연 회차별 객석 수 10% 이내로 제한합니다. 초과 시 사업비 외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Q13. 공연장이 단체에 용역비 항목으로 사업비를 집행한다면 정산 증빙 자료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용역계약서, 단체의 용역비 산출내역서, 세금계산서, 용역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Q14. 공공 공연장으로서 총람에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공연장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사업 참여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본 사업에 참여가능한 문예회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포한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기준(서울 지역 제외)으로 하고 있으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공연장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어 공공 공연장임을 증빙하셔야 합니다(국립공연장은 불가)

**Q15. 공연단체에게 용역비 항목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보조금 외에 자부담 금액도 용역비에 포함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공연단체의 예산 산출내역 금액이 국고보조금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자부담 금액도 일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Q16.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입금(티켓판매액, 부가상품 판매 등)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은 **정산보고 내용에 포함**하되, 귀속주체 등 활용방법은 **공연장과 공연단체 간 자유롭게 협의**하시면 됩니다.

**Q17. 공연 영상·사진(아카이빙) 용역비를 꼭 필수로 책정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본 사업의 이행 조건인 공연 영상·사진 아카이빙을 위해 필수 책정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아카이빙 기준(공모요강 참고)에 맞춰 사업 종료시 반드시 결과물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18. 공모 신청시 반드시 신청작품에 대한 공연 전체 영상을 제출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공연의 주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편집영상도 가능합니다.

**Q19. 사업 예산으로 대관료를 책정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단, 공연 연습을 위한 외부 연습실 대관료는 책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 연습실 대관료 허용 / 신청 공연장 내 연습실 대관료 불가

**Q20. 민간극장/국립시설은 본 사업에 어떠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 본 사업은 전국 문화예술회관 및 공공 공연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민간극장 및 국립시설은 본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Q21. 부가세액의 경우, 별도로 편성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공모 신청 시 **공연장은 부가세 불공제 서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종료 이후에도 **부가세 환급은 절대 금지**하며, 추후 적발시 국고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 됩니다.

**Q22. 해외 초청 작품(내한공연 등)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공연의 라이선스만 구입하여 진행하는 것도 동일하게 신청 불가합니다.

**Q23. 고유번호증만 소지하고 있는 공연단체는 본 사업에 신청이 불가한가요?**

→ 고유번호증만을 소지한 공연단체는 공연장의 협력대상으로 **참여 불가합니다.**

**Q24. 공모 시점 이전에 공연장으로부터 기획초청 공연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지원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기 확정된 기획초청 공연은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25. 신규 창제작 작품은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1회 이상 상연 이력이 있는 순수예술 분야 창작공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레플리카, 라이선스 작품의 공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Q26. 입장권을 유료화하기 어려운 야외공연장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람료는 **최소 10,000원 이상** 책정 필수입니다. 확인하시어 반드시 유료공연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27. e나라도움 내 공모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e나라도움' 로그인 ▶ (상단) 공모사업찾기 선택 ▶ 사업연도 '**2024**' 선택 ▶ 공모명 검색▶ 해당 사업명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Q28. 현재 문예회관이 온라인 티켓 예매·발권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장 결제 등 다른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티켓판매수·판매액을 공개할 예정으로 온라인 티켓 예매·발권은 필수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Q29. 예술단체 상근인력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도 책정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다만, 정형화되기 어려운 예산 집행을 위해 '일반관리비' 항목을 추가 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Q30. 공연단체 예산편성 시 여비 책정에 참고할 수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궁금합니다.**

(단위: 원)

운임				숙박료(1야)	식비(1일)
철도	선박	항공	버스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 광역시 80,000, 그 외 지역 70,000)	25,000

### Q31. 공모 지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는 무엇인가요?

구분	<유형①> 사전매칭	<유형②> 사후매칭	
		공연단체	공연장
필수	1. 공모 신청서 2. 협약 서약서 3. 성희롱·성폭력 예방 서약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부가가치세 불공제 서약서 6. 공연장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7. 예술단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공모 신청서 2. 성희롱·성폭력 예방 서약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 예술단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공모 신청서 2. 성희롱·성폭력 예방 서약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 부가가치세 불공제 서약서 5. 공연장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선택 (해당시 제출)	8. 저작권 관련 이용 동의증명서 9. 야외공연 안전관리계획서	5. 저작권 관련 이용 동의 증명서	6. 야외공연 안전관리계획서

## II. 유형① 사전매칭 방식

### Q1. 사업 신청 이전에 공연장·단체 간 사전 협력이 필수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신청에 앞서 공연장·단체 간 사업 협의 후 지원기간 내 공연장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최종선정 후 공연 내용, 회차, 일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지원결정 취소 또는 지원금 회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Q2. 공모신청 시 공연장·단체 간 협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 (공모)기간 내 협약을 맺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대체할 방법이 있나요?

→ **없습니다.** 지원신청서류 중 하나인 협약서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3. 공모신청을 위해 공연장, 공연단체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2024 서울아트마켓(10.8.~10.11.) 참여를 통한 공연장-공연단체 간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공연시설DB,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누리집 극장기술정보DB 등 유관 정보도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4. 우대 조건①(공연장이 최근 5년간 공연한 적 없는 단체와 매칭한 경우) 관련, 기획공연이 아니라, 단순 대관공연의 경우 우대 조건에 해당되나요?**

→ 아닙니다. 기획, 대관 여부와 무관하게 한 번도 공연한 적 없는 공연단체-공연장 간 조합만 우대 조건에 해당합니다.

**Q5. 우대 조건②(공연장이 해당 지역의 지역예술단체와 매칭한 경우) 관련, 단체 사무소가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각각 적용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단체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 1개 지역만 해당합니다.

**Q6. 1개 공연장이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공연 건수는 무엇인가요?**

→ 공연장은 최대 10건의 공연작품(작품당 공연횟수 무관)에 대해 최대 10억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Q7. 공연장이 희망하는 우선순위를 심사에서 반영 가능한가요?**

→ 공연장은 최대 10건의 공연작품(작품당 공연횟수 무관)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나, 장르별·지역별 쿼터(각 25%), 단체별 최대 수혜 금액·건수 등 각종 여건에 따라 반드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III. 유형② 사후매칭 방식

**Q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4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선정 작품은 공모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선정되나요?**

→ ‘올해의 신작’ 단체가 사업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경우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매칭 명단에 자동 포함됩니다.

**Q2. 공연단체의 작품 공모 선정 후 최종 매칭되지 않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 지원 불가합니다. 공연단체의 작품 공모에서 선정되더라도, 공연장과 매칭되지 않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Q3. 공연단체는 최대 몇 건의 작품을 얼마 규모로 신청할 수 있나요?**

→ 각 공연단체는 최대 1개의 작품에 대해서 최대 5억원 이하(2일 2회 공연 기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1개 공연장이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공연 건수는 무엇인가요?**

→ 각 공연단체는 최대 5개의 작품(공연당 최대 2회 공연, 2회 초과시 자체사업비로 집행)에 대해서 최대 총 5억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Q5. 공연장이 반드시 모든 장르(총 5개)에 대해서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공연장 여건상(공연가능 일자, 무대 크기 등) 유치 가능한 공연이 없는 상황입니다.**

→ 공연장은 5개 장르의 작품에 대해서 각 1개씩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불가능한 장르가 있는 경우, 본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